교회법 church law 제6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6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1. 2. 15.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인지위와 교회탈퇴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회운영을 위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다. 민법에 의한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법리이해가 필요하다. 교인 지위가 취득되면 권리가 주어지고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권리도 상실된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 지위 취득과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그러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참조)

교인(들)이 교회 탈퇴와 교단탈퇴에 대한 정확한 법리는 재산 귀속에 대한 법리와 연결된다.(*)

교회법(1-6호) 목차

교회법 제 1 호

1. 교회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정족수 고찰
   (최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2.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교회법 제 2 호

1. 노회 분쟁시 동일성 유지에 대한 고찰
   (충남노회 사건을 중심으로)
2. 노회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을 중심으로)
3.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열람과 송부

교회법 제 3 호

1. 교인지위와 총유의 사용·수익권 고찰
2. 권한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과 추인 결의
3. 총신대학교 운영을 위한 법률주의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하기)
4. 두레교회 사건이 한국교회에 준 교훈)
5. 교회 연말 공동의회 재정결산의 의미
   (총유 재산의 결산 승인권)

교회법 제 4 호

1. 교회 총회(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2. 교회의 공적 문서 발급 처리절차
   (교회 공문서 발급 권한 담임목사인가, 당회인가?)
3. 교인의 권리와 의무
   (교인의 권리는 의무를 전제하여야)
4. 부천 혜린교회의 판결에 관한 소고
5. 후임목사 절차를 위한 동역 목회자
   (법적 후임목사도 동사목사도 아니다)

교회법 제 5 호

1. 장로회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2. 교회의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해산·합병의 의결법리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에 대한 당회의 직무)

교회법 제 6 호

1. 노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2.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의 교리재판에 대한 소고
   (교리에 대한 이단재판과 총회의 이단결정)
3. 신약성경과 탈무드

노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목 차

1. 서론
2. 노회의 법적 성격
  1) 치리회인 노회의 교회법적 성질
  2) 단체법으로서 노회의 법률적 성질
3. 노회의 회원권과 언권회원
  1) 노회의 구성원
   (1) 목사회원 (2) 장로총대
  2) 언권회원과 별명부 회원
4. 노회의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
5. 노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노회의 소집절차
   (1) 소집권자
    ① 노회장의 소집권 ② 노회장 유고시 소집권자
    ③ 노회장 궐위시 소집권자
    ④ 노회장 임기 중 정년시 소집권자
    ⑤ 노회장 사임서 제출시 소집권
    ⑥ 노회장 비상 정회시 속회 소집권자
   (2)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와 소집권자
   (3) 소집 공고
    ① 정기노회 경우 소집 공지
    ② 임시노회 10일 선기 공지
    ③ 소집 공지 방법
   (4) 안건(회의목적) 사전 공지 의무
    ① 정기노회의 경우 ② 임시노회의 경우
   (5) 안건 상정
    ① 정기노회의 경우 ② 임시노회의 경우
  2) 의결방법
   (1) 노회장의 의결권과 표결권
   (2) 의결권의 전제 요건
    ① 시무목사 계속 청빙청원 절차
    ② 시찰위원의 노회 경유권과 시찰회
   (3) 의사·의결정족수
    ① 의사정족수 ② 의결정족수
   (4) 표결방법
    ① 만장일치로 결의할 경우 표결방법
    ② 찬·반의 경우 표결방법
6. 의사록(회의록)
  1) 노회 의사록은 반드시 적성해야 한다.
  2) 회의록에 첨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3) 회의록 채택과 회의록 효력여부
  4) 회의록, 민법 규정과 판례는 무엇인가?
  5) 회의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6) 회의록에 기록된 잔무의 의미
6. 결론

〈요약〉

법령상 교회라고 할 때에는 기독교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종교 단체까지 포괄할 때에는 종교단체라는 통칭을 사용하여 기독교는 교단, 불교는 종단이라고 한다. 법문언상 대체로 교회란 개념에는 지교회(개별교회)만을 포함하고, 지교회 상급기관은 종교단체(교단)라는 더 넓은 개념이며, 법원은 교회, 총회와 같이 노회 역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노회는 장로회 정체의 3심제도를 통한 전국교회의 연합을 구현하며, 지교회 당회의 상회이며, 총회의 하회로 장로와 교인들의 2심재판 관할이 되며, 목사는 1심 재판 관할이다. 노회는 관할 지방(지역)의 모든 목사와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구성하며, 지교회 설립, 분립, 폐쇄와 지교회 담임목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다. 노회의 자치법규로 '노회규칙'이 있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법학박사, 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교회 정관법 총칙」 외 다수.

1. 서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 지교회 형태로 존속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이다. 하나의 교회이지만 각 지교회 형태로 존속함에 따라 자칫하면 교회가 하나됨의 성질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한 지역 단위[1]로 묶어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지교회가 하나의 치리회로 조직하는데 그것을 노회라 한다.

노회는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하기 위해 지교회의 상회로 존재한다. 일정한 지교회의 조직교회(당회)가 모여 조직된 것이 노회이며, 모든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장로총대에 의해 조직된다.

모든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다. 목사가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이나 목사직 사직(자유사직, 권고사직)[2]되어 평신도로 돌아가지 않는 한 목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지교회 시무직을 사면할지라도 목사임에는 틀림 없으며, 노회 소속으로 시무와 그 형편에 따라 목사 칭호를 부여받는다. 목사에게 있어서 노회는 영원한 고향이며, 노회를 통해 자신의 목사직에 대한 정체성이 보존·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노회는 소속 지교회에 대한 관리·감독과 치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노회 결정은 지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지교회에 대한 노회의 결정과 목사직에 대한 노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해당 교회와 목회자인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회의 분쟁은 결국 지교회 분쟁을 심화시키고 목사직 신분에 대한 다툼은 많은 교회를 혼란케 한다. 따라서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노회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존속하고 계승되어야 한다. 노회의 각종 결의는 지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본 논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노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관련 문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한다.

2. 노회의 법적 성격

1) 치리회인 노회의 교회법적 성격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정치편은 총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원리에 대한 규정이고 제2장은 교회에 대한 규정이다. 왜 정치를 다루는 헌법에 '원리' 다음으로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가? 여기서 말한 교회는 조직신학 측면에서 교회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 헌법의 교회론은 '어떠한 교회론이기에 교회정치가 필요하고 조직과 각종 규칙이 필요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칼빈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란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혁신을 포함했다. 각 회중을 교회라고 부르는 신자들의 모임들이 여러 장소로 분배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유형교회의 지교회 형태를 언급했다.

그러나 모든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1) 노회는 무지역 노회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38도선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일이 될 것을 기대하며 두고 온 노회를 없앨 수 없어 고향 노회 출신별로 모여 이북노회를 복구조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이북노회 복구의 의미가 상실된 채 이남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북노회에 가입하여 이북노회는 사실상 무지역노회가 되어 이남의 모든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삼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다.

2) 목사의 사면은 지교회 시무직을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은 못사직을 그만두고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7장 제1-5조).

않고 오히려 신성 모독으로 그를 모독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구별하는 올바른 표인 "거룩한 복음이 순수하고 신실하게 설교되고 전파되며 들려지고 지켜지는 것과 인간들에게 언제나 있듯이 다소간의 불완전한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이유에서 "교황의 법규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들은 기독교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악마의 회당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양심을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에 신자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깨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법과 규칙 제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탄의 사악한 교리로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다.[3]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 구별하며, 유형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한다.[4] 유형교회로서 장로회 정치제도는 장로에 의한 정치, 교역의 동등성, 치리회의 3심제도이다. 지교회의 상회로서 노회의 관할 지역(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총대로 구성한다.[5] 장로회 정치원리상 교회설립은 노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며, 목사라도 자의로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 설립뿐만 아니라 분립, 합병, 폐지, 당회 조직[6]은 물론 목사의 임직과 지교회 담임목사의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 등을 포함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7]

지교회의 연합은 상회인 노회를 비롯한 치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8], 이 연합은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9]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된 권징을 동일하게 시행하며 이는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10] 치리회로서 노회는 지교회(당회)의 상회이며, 총회는 노회의 상회로 최고회이다.

2) 단체법으로서 노회의 법률적 성격

교회와 그 구성원이나 목회자들을 상대로 법률적인 개념을 언급할 때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신학교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회 현장에서 민법이니 법인이니 하는 단어들은 생소한 개념이다.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일반 대학의 법학 논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이유는 학문의 연구대상과 그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대학교의 법학이 신학대학교의 신학과 교회법을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목회자들에게 법률적인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 자체도

3)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중에서.
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2장 제2조.
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2조.
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5항., 이 부분은 후술한 것과 같이 국가 법원은 이같은 권한을 노회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교회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한다.
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
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8장 제2조 제2항.
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4항.
1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8장 제2조 제2항.

한계가 있다.

목회자들에게 민법에서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무의 주체, 법인격 등은 이해하기 힘든 용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와 법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교회나 노회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회나 노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종교 내부적인 용어개념만으로는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교회와 노회 분쟁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 법원은 교회 용어와 개념만이 아닌 일반 법률적인 용어와 그 개념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용어나 개념의 이해를 외면하면 외면한 것만큼 문제가 발생되어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법학 박사학위 논문의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로 전개했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만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3조, 제34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의 주체를 말한다. 민법이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단체 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하므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인제도를 두고 있다."[1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법 제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민법에서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있고, 특별법에 의한 학교법인, 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다. 법인의 성립은 허가주의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 사업을 위해 결합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11) 소재열 "교회정관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서론 참조.

이러한 법률용어와 개념에서 교회나 노회는 어떻게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와 노회 역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된 인적 단체이다. 그러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이다. 이런 단체를 '법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단체'이므로 말 그대로 '법인 아닌 사단(단체)',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정리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한다(준용과 다른 개념이다).[12] 따라서 교회나 노회는 유추적용된 민법의 사단법인에 대한 단체법이나 법인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는 이러한 단체법에 의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여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적용하여 많은 판례법리를 확충해 왔다. 그렇다면 '노회는 어떠한가'하는 문제이다. 노회 역시 교회처럼 법인 아닌 사단으로의 인정여부이다. 만약에 노회가 단체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되므로 판단의 범위는 노회규칙과

12)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준용(準用)은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나 유추적용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에서는 유추적용이 가능하지만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교단헌법에 해당된 관련규정의 범위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단 노회규칙과 교단헌법의 관련규칙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규칙에 특별하게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법원은 분쟁시 판단의 범위를 민법의 일반 원리에 의해 판단하므로 판단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때 노회는 그동안 관례나 상식적인 판단, 해석 등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정확한 법률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학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조건에 대한 학설과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사단의 표지는 첫째, 지속성 있는 목적을 가질 것, 둘째, 독립된 사회적 단위로서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존재일 것, 셋째, 사회적 조직, 즉 대내외적으로 의사결정기관(총회)과 넷째, 사회적 조직을 포함하는 단체의 기본구조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을 것, 다섯째, 구성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등을 들고 있다.[13] 이러한 성립조건에 따라 대법원은 장로회 정체에서 노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례입장을 갖고 있다.

> 원고 노회[14]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교회들이 협의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여 권징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동 교회권 내 각 교회의 목사, 선교사, 당회의 총대 장로로서 구성되고 동 노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서기, 회계등의 임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마다 임시회를 열어 회무를 처리하는 종교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노회는 민사소송법 제48조[15] 소정의 당사자 능력있는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며 …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법리 오해 내지는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16]

노회는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노회의 명의로 법률행위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노회명의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은행권에서 노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어 교회 명칭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법원은 노회의 모든 분쟁을 노회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노회규칙에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 교회헌법(교단헌법)을 민법의 일반 원리속에서 판단한다. 이때 노회의 관례나 상식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지교회 합병은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있으면 노회는 이를 승인한다. 하지만 민법에서 교회 정관에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교회가 합병할 경우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미충족할 때 무효로 판단한다. 노회는 유효로 승인하지만 법원은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노회의 회원권과 언권회원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노회의 회원권은 복잡한

13) 소재열 『교회정관법 총칙』(서울: 말씀사역, 2017, 4판), 63.
14) 본 사건은 경북노회의 계명대학교 사건 판례이다.
15) 지금은 제48조가 아닌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6)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참조, 원심 대구고등법원 1975.5.20. 선고 74나1132 판결 참조.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회 정회원과 언권회원에 관해서 알아본다.

1) 노회 구성원

노회 구성원은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17]에 따라 회원권과 언권회원으로 구분된다. 회원권이란 의결권을 갖는 회원을 의미하며, 언권회원이란 의결권 없이 본회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구성[18] 하지만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1) 목사회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19] 목사는 노회 회원이요[20], 장로는 당회 회원이므로 노회는 장로총대라고 한다. 목사는 지교회 시무와 그 형편에 따라 회원권과 언권회원으로 구분한다. 첫째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다 회원권이 있다. 시무하는 목사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분된다. 조직교회(당회조직)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임기가 만 70세까지 시무하는 위임목사가 있다. 위임목사는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21] 그러나 조직교회에서 임기 1년의 시무목사가 있다. 이때 시무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은 목사로 위임을 받지 않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22] 조직교회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는 의결권이 있는 노회의 정회원이다. 미조직교회(당회 미조직)의 임기 3년의 시무 목사는[23]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주었을 때에 정회원권이 주어진다.[24]

기관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 기관에서 행정과 신문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25] 기관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26]고 했다. 지교회 임시로 시무할 경우,

---

1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 정치 제4장 제4조 본문.

1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2조.

1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2조.

20) J. A. 하지, 배광식 외 2인 옮김, 『정치문답조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139면., 제236문 담임목사가 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되는가? "담임목사나 어떤 목사든지 본·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목사는 개교회 아래 있는 거이 아니라 노회의 보호와 관할하에 있으므로 노회의 회원이다." "은퇴목사는 평신도가 아니므로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없다. 어떤 지교회의 무흠입교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해당 교회의 내규에서 따라 출석위원으로 투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예외의 특권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정치문답조례 제96문) "그러므로 질서적인 면에서 당회나 공동의회가 그를 소송할 수 없다. 당회장은 오직 노회의 관할하에 있고, 노회만이 감독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다. 당회장이 목사라면 당회장이 당회에 소송하는 것은 질서에 맞지 않다. 당회장의 경우는 노회에서 다루어야 한다."(정치문답조례 제222문)

2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 정치 제4장 제4조 제1항.

2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단서조항.

2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5장 제12조 제1항.,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규정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임의규정이다. 일부 노회에서는 미조직교회에서 청빙받은 목사에게 당회장권 없는 시무만을 허락하여 위임목사를 임시 당회장을 임명하는 경우들이 있다.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7항.

2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5장 제12조 제2항.

'임시목사'에 해당되어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에 따라 시무 기간은 1년(조직교회)과 3년(미조직교회)으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목사는 노회 회원권을 갖고 있다.[27] 기관목사는 기관의 청빙청원이 있을 때 기관목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목사의 임기는 해당 기관의 임기까지인지 아니면 노회가 기관목사 임기를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노회가 별도로 이를 결정하든지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노회는 매년 기관목사를 청빙한 해당 기관에게 시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노회 규칙으로 기관목사는 매년 해당 기관으로부터 시무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노회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하는 임시목사'이며, 계속 시무하려면 당회 결의로[28]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29] 총회는 부목사를 지교회 시무목사로 유권해석을 하여 노회의 정회원이며, 정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행정을 처리한다. 임기 1년 종료 후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는 만70세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정회원권을 갖는다.[30] 원로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한 은퇴목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로 인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회원 '이외의 목사', 즉 정년 이후 원로목사[31], 전도목사[32], 은퇴목사, 무임목사 등은 언권회원으로 결의권이 없다. 또한 정치 제

2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3조.

28) 서울노회장 김우일 씨가 헌의한 부목사 계속 청원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 계속 시무를 청빙하는 것으로 확인하다(제92회 총회 회의결의, 2007).

2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3항.

3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3조.; 70세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총회 결의에 따라 70세 이전의 원로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31) 원로목사는 노회가 부여한 언권회원이며, 지교회 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로목사의 소속 관할은 지교회가 아닌 노회이므로 1심 권징재판의 관할은 당회가 아닌 노회이다. "담임목사나 어떤 목사든지 본·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목사는 개교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보호와 관할하에 있으므로 노회의 회원이다."(J. A. 하지, 배광식 외 2인 옮김, 『정치문답조례』(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제236문) 교회법 전문가인 박병진 목사는 "원로목사란 시무하든 지교회와는 아무 관계 없는 무임목사가 분명하나 은급을 받는 관계가 있을 뿐이요, 노회에서는 정회원으로 목사권이 구비한 명예목사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박병진, 『교회정치통람』(서울: 성광문화사, 1988), 9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무흠입교인과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이같은 교인 분류에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입교인으로 제한한다. 학습교인과 원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의결권)은 아니지만 교회 교인인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곧 교회에 출입할 수는 있어도 총유물권자는 아니다. 여기서 원로목사는 총유물권자는 아니지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다. 예배에 참석할 수있다는 말은 학습교인과 원입교인과 같이 공동의회 의결권은 없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일 경우, 원로목사가 지교회 공동소유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원로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일 수 없다. 만약에 교단총회가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고 유권해석을 할지라도 지교회는 교회 정관으로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가 원로목사에게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주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3자가 내 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없다.

32) 전도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었으나 제76회 총회(1991)에서 전도목사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단, 노회언권이 된다"를 삽입하여 개정하였고, 이듬해인 제77회 총회(1992)에서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헌법에는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

10장 제3조에서 언급된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으로[33] 총회가 특별하게 정회원이라는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는 다 언권회원이다. 군종목사[34], 군 선교사[35], 교육목사[36], 선교사[37] 등도 그 밖의 목사에 해당되지만 노회 정회원으로 총회가 유권해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호명하지 않는 회원으로 별명부에 있는 목사가 있다. 특별한 사정[38]에 의해 노회 결의에 의해 회원 명부에서 삭제되어 별도의 명부인 별명부에 기재된 회원을 의미한다. 회원이긴 하지만 회원명부에서 별명부로 옮겨져 회의시 호명을 하지 않고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목사이다. 별명부에서 회원 명부로 옮기는 것 역시 노회 승인(결의)이 필요하다. 회원권이 정직당한 목사 역시 회의시 회원 호명을 하지 않는다. 정직당한 목사 역시 별명부의 정직자 명단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장로총대

노회 회원은 목사라고 한다면 장로는 회원이 아니라 '총대'라고 하여 이를 '장로총대'라고 한다. 노회의 장로총대는 지교회 당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정하여 파송한 총대임을 노회의 천서로 증명한다.[39] 장로총대가 부노회장에 취임하여 전직 부노회장의 신분일지라도 노회에 언권회원이 될 수 없다. 원로장로 역시 어떤 형태로든지 노회 회원 및 언권회원이 될 수 없다.[40]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교회에서 장로총대로 파송되지 않거나 노회에서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하지 아니하면 장로총대가 될 수 없다.[41] 장로총대 모두는 노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노회에서 장로총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행위는 지교회 당회가 1심 재판의 시벌권을 갖고 있다. 노회가 지교회 당회로 하여금 시벌케 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 노회가 1심 재판권을 갖는다.[42]

2) 언권회원과 별명부 회원

정회원은 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회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의권이 없는 언권회원이 있다. 언권

3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3조.
3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8항.
3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9항.
3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10항.
3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11항.
38) 특별한 사정이란 노회가 결의나 규정으로 무고히 몇 번 이상 노회에 불출석한 회원은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또한 타노회로 이명간 목사가 이명지 노회에서 이명이 승인될 때까지 본 노회의 회원이지만 이 경우의 회원권은 언권과 투표권이 없는 목사로 별도의 명부(별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명 서류가 다시 환부해 왔을 때 별명부에서 회원명부로 옮겨 기재하여 회원권이 회복된다(권징조례 제109조).
3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2조., "장로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치 제10장 제4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9장 제5조 제8항.,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이는 당회의 직무로 규정한다.
4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보고서 104면., "경남노회에서 제출한 원로장로에 대한 질의의 건은 원로장로는 노회총대가 아니므로 호명할 필요가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4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4조.
4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Ⅴ.권징조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회원이란 본회에서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는 있으나 결의시 동의나 재청권, 그리고 결의권이 없는 회원을 의미한다. 간혹 정년 후 원로목사가 어떤 발언을 하면 발언으로서 참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의장은 원로목사의 발언 후 동의와 재청을 물어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결의에 위법성 논란에 빠진다.

그리고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 중에 언권회원이 포함되지 않는 정회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한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별명부 회원은 후술한 것처럼 정회원과 언권회원 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기록한 별명부에 기재하기로 한다는 노회 결의에 의해 작성된 회원 명부이다. 제명이나 면직받은 회원은 회원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제명명부, 혹은 면직명부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제명이나 면직은 아니지만 오래동안 불출석한 회원 등에 대해 노회 결의로 회원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에 기록하면 된다. 별명부에 기재된 회원은 이명이 불가능하다. 이명하려고 할 때에 회원명부에 옮기는 노회 결의 후에 이명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별명부에 기재된 회원은 노회 개회시 호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권회원은 노회 개회시 회원 호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 의사정족수는 정회원 중심으로만 계수한다.

4. 노회의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

치리회는 의사정족수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한다.[43] 당회 역시 복수장로 제도하에서 치리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치리회에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에서 '같은 권한'이란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같은 권한으로 해석한다.[44] 그런데 치리회인 노회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이 문제가 된다.

J.A.하지는 "지교회가 총대장로 한 사람씩을 파송하여 치리회에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한 교회 목사 수가 여럿이면, 총대장로도 목사 수와 같은 비율로 두 명 이상 파송할 수 있다"고 하여 "어떤 경우에서라도 총대장로는 목사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45] 장로회 정체에서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여야 한다는 원칙은 정치문답조례나 미국의 장로교회 상황에서 적용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34년까지 장로총대는 "각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했다.[46]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상황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정 자체도 목사회원과 장로총대가 동수일 수 없는 규정을 전제하고 있다. 조직교회에서 장로총대는 1인 개념이 아니라 세례교인 비례원칙이다. 장로총대 1인(세례교인 200명 미만), 2인(세례교인 200명이 이상 500명 미만), 3인(세례교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4인(세례교인 1,000명 이상)을 파송하는 원칙이다.[47]

---

4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2장 제2조.
44)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호, 소재열 "장로회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참조.
45) J. A. 하지, 배광식 외 2인 옮김, 『정치문답조례』, 제318문, 181면.
46)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조선예수교교장로회, 1934), Ⅳ.정치 제11장 제2조.
4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2조.

또한 담임목사 보좌 개념인 부목사는 모두 노회 회원으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미조직교회는 장로총대가 없으며, 시무목사만 노회 회원으로 의결을 갖고 있다. 이같이 내용면에서 목사와 장로총대를 동수로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구조이다. 이런 측면이 고려되어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해석이다. 현행 치리회로서 노회는 장로총대를 배제한 목사회원들로만 각종 결의가 가능하므로 이는 장로회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노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장로회 정체로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들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5. 노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집합체로서 노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리는 철저하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교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아무리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분쟁이 발생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관례와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결의들은 열거된 성문(문언) 규정에 의해 무너진다.

1) 노회의 소집절차

(1) 소집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소집권자는 노회장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 대표자인 노회장이 아닌 자에 의한 소집은 위법으로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된다. 소집권자에 대한 하자는 결의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① 노회장의 소집권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하여, 그 회장으로 하여금 회무를 진행하며, 회장은 매 사건에 결의를 공포한다.[48] 앞서 살펴본 대로 노회는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노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로 노회를 대표한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② 노회장 유고시 소집권자

특별한 경우 노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고란 궐위와 다른 개념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회장의 유고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로 할 때 특정인들이 이를 임의로 해석하면 안된다. 노회장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유고가 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현존하는 노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출타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를 유고라 할 수 있다. 이런 유고일 경우에는 노회장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부노회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임할 수 없을 정도의 유고나 궐위일 경우, 자동적으로 부노회장이 소집권을 갖고 있다. 부노회장(목사, 장로 각 부노회장) 모두 유고시에 서기가 소집한다.[49]

---

4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9장 제1조 제2조.

4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회장이 유고할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③ 노회장 궐위시 소집권자

노회장 궐위는 노회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적법절차에 의해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천이나 임기중 정년 등으로 궐위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소집권자는 부노회장이 된다.

④ 노회장 임기 중 정년시 소집권자

노회장이 70세 정년의 해에는 노회장으로 선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하여 노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적법한 노회장 선임이라 할지라도 70세 정년과 동시에 자동 은퇴가 되므로 은퇴 이후에는 노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며 노회 소집권도 상실된다.[50]

⑤ 노회장 사임서 제출시 소집권자

노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할 경우, 그 사임서는 반드시 노회 승인을 받아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된다. 노회결의로 선임하였으므로 노회 결의로 사임서가 처리되어야 한다. 노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임시노회 소집안건에 사임서가 회의목적으로 공지되어 노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아직 사임서가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노회 소집권자는 변함이 없다.

⑥ 노회장 비상 정회시 속회 소집권자

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노회 회무 중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인 비상정회를 선언할 경우[51], 속회는 반드시 소집권자인 비상정회를 선언한 노회장에 의해서만 소집될 수 있다. 비상정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회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문제이다.

임시노회는 사전에 노회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이 회의목적에 없으므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정기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면 결의할 수 없다. 후술한 바와 같이 노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안건 상정은 결의될 수 없으며, 만약에 결의하였을지라도 무효사유가 된다.

(2)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과 소집권자

정기노회는 소집권자가 노회 규칙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시노회는 반드시 소집 청원자에 의해 소집권자인 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 소집 청원자는 안건 청원자는 아니다.[52] 임시노회 안건 청원자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한 안건이어야 한다.[53]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가 안건을 만들어 청원한 것은 아니다.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가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단 안건을 청원한 당회의 담임목사와 치리장로가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는 될 수 있다.

(3) 소집 공고

교회법, 민법,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일관된 법리는 회의체는 반드시 회원들에게 사전에 소집

5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보고서 108면., "경기서노회장 정년 관련 자격에 대한 질의건은 제96회 총회와 제103회 총회결의 대로 시행하도록 답변한 바, 재임기간 중 정년이 도래 할 경우 노회장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다."

5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9장 제2조.

5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5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5조 제2항.

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소집공고와 방법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칙대로 소집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이 없는 경우, 민법의 원칙인 1주간 전에 소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소한 문제일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회원들과 단체에 중대한 문제일 경우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원의 판단의 범위는 관례와 상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① 정기노회 경우 소집 공지

정기노회 소집 공지는 노회 규칙으로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한다.[54] 노회 규칙에 정기노회 소집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노회는 반드시 규칙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임시노회 10일 선기(先期) 공지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임시노회 소집은 10일 전이 아니라 10일 선기이다. 예컨대 11일에 임시노회를 소집한다면 1일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2일에 소집공고를 하면 하루가 모자라게 된다.

③ 소집 공지 방법

소집 공지 방법은 주로 우편물을 이용하여 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하지만 핸드폰 문자 메시지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회결의나 노회 규칙에 "노회에 등록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공지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지 방법이 된다. 이 경우 핸드폰 번호 문제로 공지를 받지 못했을 때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다.

(4) 안건(회의목적) 사전 공지의무

모든 회의체는 회의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목적 없이 개최된 회의는 결의해야 할 사항이 제한되어 있지 않게 되어 무제한 적으로 결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된 회의는 목적 없는 회의가 되어 혼란에 빠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법취지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공지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55]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그 사항에 관해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목적 공지가 생략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56] 노회는 전원이 출석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므로 이를 예외로 인정받기 힘들다.

① 정기노회의 경우

5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5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등 참조.

56) 전개 판결문 참조.

노회 정기회는 사전 안건을 공지할 수 없다. 정기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한 각 청원건[57]를 접수하여 처리한다.[58] 보편적으로 각 노회는 정기회 소집을 1개월 내지 2개월 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기회 소집을 공지할 때에는 회의 목적인 각 당회에서 제출한 청원건을 각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없다.

따라서 정기회는 회의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다. 정기회 통지를 받은 회원들은 이러한 안건 상정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므로 정기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임시노회 경우

임시노회는 정기회와 다르게 반드시 10일을 선기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노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 회의목적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회의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시노회를 위한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이 모호하면 결의 자체가 모호한 결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결의를 하게 된다.

임시노회는 안건청원은 각 당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회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안건청원이 특별한 사건일 경우, 노회 소집 청원자에 의해 임시노회를 청원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임시노회 안건 청원자는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59] 안건 청원자가 소집 청원자가 될 수 있지만 소집 청원자가 안건 청원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는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노회의 안건청원은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한 청원건이어야 한다. 단 담임목사의 지교회 시무 사면건이나 노회 임원의 사면건을 당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안건청원과 소집 청원이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가 임시노회 소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소집권을 갖고 있다. 지교회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지만 노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다. 노회 임원회의 결의는 불필요하다. 노회 소집 권한은 노회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노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의논할 수는 있다.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라고 규정한다.[60] 반드시 "회의(會議)할 안건"(회의목적)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회의목적은 임시노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무효사유가 된다.

5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

58) 노회의 처리절차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각 청원서가 노회 서기부에 접수되면 노회 서기는 노회 헌의부에 이첩한다. 헌의부는 노회 정기회 전에 청원건을 분류하여 각 상비부에 배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본회는 헌의부의 보고를 승인하면 각 상비부는 배정받은 각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노회 결의가 된다.

5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전단.

6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후단.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임시노회 소집일 10일을 선기하여 회의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임시노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의결방법이 적법했다고 할지라도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원인이 무효이면, 결과가 적법했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원칙이다.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노회장 사임건’이나 ‘위임목사 사임 건’으로 회의목적으로 통지한 후 부노회장이 노회장 사임건에 대해 동의 재청을 물어 결정한 후 노회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교회 위임목사가 해당 교회에 위임목사 사면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노회장 선임과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무효가 된다. 이유는 임시노회 소집통지에서 노회장 선임과 임시당회장 파송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회장 사임건과 위임목사 사면건을 임시노회에서 처리한 후 노회장 선임과 임시당회장 파송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이를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61] 임시노회 회의 목적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의할 수 없다.

(5) 안건 상정

노회의 안건상정은 앞서 “안건(회의목적) 사전공지의무”에서 살펴 보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장로회 정치에서 치리회 제도나 노회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사전에 절차에 따라 상정된 안건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무가 진행되면서 순간적으로 특정인이 안건을 제시하여 결의한 것은 다 무효사유가 된다. 의장은 특정 개인이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동의하고 재청할 때에 회장은 “본 건은 사전에 안건상정이 되지 않는 건으로 결의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① 정기노회의 경우

정기노회에서 결의해야 할 안건상정 방법은 첫째, 노회 규칙에 따라 사전에 당회가 규칙대로 제출한 청원건을 노회 서기가 접수하고 이를 헌의부에 이첩한다. 헌의부는 각 청원서의 성격에 따라 각 상비부에 배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본회가 이를 승인 할 경우 정식 안건이 상전된 것으로 본다. 둘째,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일명 ‘긴급동의안’이다. 사전에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청원서 성격 자체가 당회를 통해서 청원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긴급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노회 규칙으로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긴급동의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가 긴급동의안 제출시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셋째로 이전 노회에서 특별한 사건에 대해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하였다면 그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본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넷째로 각 시찰위원 보고를 안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임시노회에서는 안

61) 노회 결의 내지는 노회규칙에 해당 지교회에서 위임목사직을 사면하여 임시노회에서 승인되어 처리될 경우, 임시당회장 파송은 시찰위원들이 파송한다, 혹은 임원정치부에서 파송한다는 등의 위임결의 내지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제10항).

건으로 채택될 수 없다. 이는 이미 사전에 회의 목적으로 공지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노회에서는 불가하고 정기회에서 가능한 안건 상정 방법이다. 임시노회에서는 노회장 불신임안 안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결의할 수 없는 것도 사전공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찰위원 보고나 특별위원 보고는 임시노회에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건으로서 회의 목적에 기재되어 공지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

② 임시노회 경우

임시노회 역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건 상정 방법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 당회가 적법한 절차인 규칙대로 안건을 노회 서기에게 접수한다. 이 청원서가 특별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회원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임시노회 소집 청원이 있어야 한다.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는 '안건 청원자'는 아니다. 간혹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들이 안건을 청원하여 소집을 청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리적 하자로 무효사유가 된다.

임시노회 소집시 "회의 할 안건"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 한다.[62] 따라서 임시노회 안건을 노회 개최 전에 헌의부가 안건을 정치부로 이첩하고 정치부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등의 결의는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미 공지한 안건은 자동 상정되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노회결의나 규칙으로 임시노회 안건은 사전에 "헌의부를 통해 정치부에 배정하고 정치부는 안건의 정치적 사건을 심의하여 본회 결의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규칙을 두면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의부, 정치부 사전 심의 없이 직접 본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의결방법

의결방법은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다. 소집절차가 하자이면 의결방법은 논의할 이유 없이 무효사유가 된다. 반대로 소집절차는 적법했으나 의결방법에 하자이면 이 역시 무효사유가 된다. 노회의 의결방법에 관해서 살펴본다.

(1) 노회장의 의결권과 표결권

노회장은 회장으로 의결권과 표결권을 갖고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63] 제8항에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제459, 613문답⑫⑯참고)"라고 규정한다. 의장으로서 노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먼저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하지 않고 가부 동수일 때 본인이 결정권을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투표를 하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하면 이중 투표가 된다.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

6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9조 후단.

63) 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되었고 일반 사회의 회의규칙과는 다르다(정문제618문답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준용케 하다가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식 채용하고 회록에 부록케 하였다. "회규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분답조례 책 제618 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본 총회 의회 규칙으로 채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

결된다"고 했다.[64]

회장은 회원으로 하여금 회칙을 지키게 할 것과 순서대로 회무를 진행하며, 의논 후 신속한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각 회원은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회원의 발언권은 반드시 의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행사하게 하고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회원 간의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해야 한다. 회장이 표결을 위해 가부를 물을 때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하여야 한다. 회장은 매 사건의 결정을 공포하여야 한다.[65]

(2) 의결권의 전제 요건

① 시무목사 계속 청빙청원 절차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의 계속 청빙청원에 대한 헌법 규정은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고 했다.[66]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아야 하며, 노회결의[67]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68] 임기 종료 후 계속 시무 청빙을 하지 않는 시무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어 의결권이 상실된다.

6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9장 제2조.
6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9장 제2조.
6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67) 만기 이전에는 공동의회가 필요 없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시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교회 교인들이 연서로 서명하여 증인불가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 노회는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6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5장 제12조 제1항.

총회는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의 건(임시당회장 적격 문제)은 총회결의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라고 했다.[69]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 총회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목포노회 질의에 대하여는

가. 시무 연기 청원은 임기 3년이 마치기 전에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을 경우, 대리 당회장으로 시무 연기 청원을 할 수 있으나 당회장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을 해야 한다.

다. 단, 3년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해야 한다.[70]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3년 임기 종료 후 계속 시무 청빙 청원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기는 3년이며, 반드시 임기 3년 전에 청빙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대리 당회장이 시무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

6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2회 총회 결의.
7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5회 총회 보고서', 113면., 시무기간 3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무임목사가 된다. 무임목사가 된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청빙절차를 통해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으면 다시 시무목사가 된다. 총회는 이를 '시무연장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새로운 청빙에 해당된다.

다는 내용은 없다. 시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아직 당회장권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무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리 당회장으로 청원한다. 대리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니라 본인이 노회 내 한 사람을 청하면 된다.

셋째,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지 않고 시무권만 주었을 때에는 3년 임기 종료 전에 노회의 파송 당회장을 통해 계속 시무 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의회를 통해서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넷째,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시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무기간이 종료된 후 무임 목사된 상태에서 진행된 청빙 절차이므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해당 교회와 상관없는 완전 무임목사가 된다.

② 시찰위원의 노회 경유권과 시찰회

경유권이란 단순히 지교회가 노회에 청원서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경유하는 데 불과하다. 노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청원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준비되지 않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올바른 서류가 되도록 돕는 일이다. 노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거나 교회가 노회에 청원하는 청원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시찰위원은 서류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결의를 하면 안된다. 이러한 권한이 없다. 단지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적법한 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시찰위원의 직무이다.

독노회(1907)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에서 노회 안에 시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71]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에서만 설치한 고유한 제도이다. 1922년에는 더 상세하게 시찰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72] 노회는 시찰할 구역을 정하며, 시찰위원은 지교회와 미조직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사항을 협의하며, 목사가 없는 허위교회(虛位敎會, the vacant church)의 당회가 설교할 목사를 청하려 할 때 함께 의논하고, 그 지역 목사와 강도사가 사역할 장소와 사례비에 대해 노회에 보고할 수 있게 했다.[73] 시찰위원회의 목적은 각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해 시찰하는 것인데, 3년에 한 번 각 교회를 시찰해서 영적인 상태, 재정 형편, 전도 상황, 주일학교와 지교회 소속 각 회의 상태를 살피도록 했다.[74]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동) 헌법 최종판(2018)에 의하면 노회는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5]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고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라고 한다.[76]

---

71)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은 전문 5조 14항과 세칙 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교회, 제2조는 예배절차, 제3조는 직원, 제4조는 교회의 치리, 제5조는 규칙 개정에 대해서 다룬다(『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회록』, 30-41.)

72)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 Ⅳ.정치 제10장 제7조 제4-6항.

73)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Ⅳ.정치 제10장 제7조 제4항.

74)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Ⅳ.정치 제10장 제7조 제6항.

7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4항.

7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

또한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했다.[77] 시찰위원은 지교회에서 제출한 “각종 문의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고 하여 시찰위원의 경유권을 규정하고 있다.[78]

지교회가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시찰위원의 경유권은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찰위원과 시찰회는 다른 개념이다. 경유권은 시찰회에 있지 않고 시찰위원에게 있다.

둘째, 시찰위원이 시찰할 구역은 노회가 정하는데 시찰 구역을 대상으로 임의단체로 ‘시찰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교회헌법은 경유권은 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에게 있다.

셋째, 시찰위원은 노회 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 규칙대로 선정한다. 그러나 노회 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시찰회가 시찰위원을 선정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시찰위원은 각 노회별로 그 인원을 5인, 7인, 9인, 15인 등의 홀수로 정한다. 시찰위원은 위원장이 존재한다. 노회 규칙에 시찰장은 시찰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정함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 내용이 없는 경우, 시찰장을 포함한 시찰위원을 선정하였을 때 시찰장은 시찰위원원장을 겸할 수 있고, 시찰장 외에 별도로 시찰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

다섯째, 노회는 시찰에 대한 권한은 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이므로 시찰위원은 반드시 위임목사여야 한다. 따라서 시찰위원 가운데 시찰위원장을 선임하므로 시찰위원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

여섯째, 시찰장이 시찰위원장을 겸임한다고 할 경우,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 그러나 시찰위원장과 시찰장의 겸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찰장과 시찰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 경우에는 시찰장은 꼭 위임목사일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교회헌법 정치 제10장의 노회 규정 조항에 시찰의 직무는 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노회 규칙에 위임국장은 시찰장이 겸무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 그러나 시찰장이 위임국장의 겸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찰장은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찰장이 시찰위원장을 겸무한다고 할 때에 앞서 살펴본 바대로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

결국 노회 직무 중에 시찰위원의 직무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고유직무가 아닌 조직교회 위임목사의 고유직무라 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조직교회와 위임목사에 대해 시찰할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에 시찰위원은 위임목사여야 하며, 동시에 시찰위원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논지이다. 또한 시찰장은 반드시 시찰위원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노회 규칙으로 시찰장은 시찰위원장으로 겸무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시찰장과 시찰위원이 별개로 선임할 경우, 즉 시찰위원장과 시찰장이 별도로 선임될 경우 시찰장은 위임목사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

6조 제9항.

7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10항.

7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정치 제10장 제6조 제11항.

면 시찰회가 각 지교회를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찰위원이 시찰하기 때문이다.[79]

(3) 의사 · 의결정족수

① 의사정족수

최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인 1922년 판 정치편의 노회조직에 의하면 "노회는 일정한 1지방 내에 모든 목사(5인 이상됨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는 치리장로로서 조직하느니라"고 규정했다.[80] 노회 성수(의사정족수)는 "노회가 예정한 처소와 시일에 본 노회에 속한 목사 3인 이상과 장로 2인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라고 규정하였다,[81]

1922년 판 헌법의 제1차 수정판인 1930년 판(1934년 판 포함)에서 노회조직은 "노회는 일정한 지방 내에 모든 목사(5인 이상됨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하나니"라고 했다.[82] 노회 성수(의결정족수)는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시일에 본 노회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라고 규정한다.[83]

그러나 1960년에 고신측과 합동한 후 1934년 판에 의해 개정된 196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84]에 의하면 노회의 조직에서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5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라고 했다.[85] 노회 성수(의결정족수)는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서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라고 규정했다.[86]

그러나 제76회 총회(1991)에서 헌법(정치편) 개정결의를 했는데 노회 조직에서 "목사 5인 이상의 요함"을 삭제하여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라고 했다. 본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변경결의하고[87] 전국노회에 수의에 찬성하여[88] 제77회 총회(1992)에서 개정 공포가 이루어졌다. 대신 노회 성수(의결정족수)는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서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라는 1934년 판을 그대로 했다.

---

7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에 의하면 시찰회와 시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8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1922) Ⅳ.정치 제10장 제2조.

8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1922) Ⅳ.정치 제10장 제6조.

8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1930, 1934) Ⅳ.정치 제11장 제2조.

8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1930, 1934) Ⅳ.정치 제11장 제5조.

84) 1960년 12월 13일 제45회 계속 총회에서 고신측 총회와 합동할 때에 다시 교회 헌법과 총회규칙을 수정할 필요를 느껴 위원 17인에게 위촉하고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보고받아 이를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62년 제47회 총회에서 사용하기로 가결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66. 5. 20), 머리말 참조).

8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1964) Ⅳ.정치 제10장 제2조.

8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1964) Ⅳ.정치 제10장 제5조.

8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6회 총회 보고서』(1991), 226면.

8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7회 총회 보고서』(1992), 226면.

노회 조직의 구성요건에 대한 변화를 보면 첫째, 1922년 판은 “목사 5인 이상과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 1인씩”으로 조직되었다. 둘째, 1930년 판(1934년 판 포함)에서는 1922년 판과 동일한 “목사 5인 이상과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 1인씩”이었다. 셋째, 1961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목사 5인 이상”과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하였다. 넷째, 1992년 판 헌법에는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라고 개정했다.

노회의 의사정족수 변화에 의하면 첫째, 1922년 판 초판 헌법은 “본 노회에 속한 목사 3인 이상과 장로 2인”이었다. 둘째, 1930년 판(1934년 판 포함)은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장로 2인을 3인으로 하여 목사와 동수로 개정하였다. 셋째, 1961년 개정 판에서는 “정회원 되는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으로 1930년 판과 동일하게 했다. 넷째, 1992년 판에서는 “정회원 되는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으로 변경 없이 동일하게 규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판부터 노회의 구성요건은 목사 5인 이상이었다. 장로총대는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는 치리장로로서 조직하였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개회정족수(의사정족수)는 노회 구성요건인 목사 5인의 과반수인 3인이 출석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제77회 총회(1992)에서 개정 공포된 정치편에 의하면 노회의 구성요건인 “목사 5인 이상의 요함”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모든 목사’로 노회를 조직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장로총대는 지교회 당회의 세례교인 수로 파송했다. 구체적으로 노회 조직을 모든 목사를 회원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21당 이상을 요구했다.[89] 이렇게 노회 구성요건을 개정하면서 개회성수(의사정족수)는 모든 목사의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목사 3인, 장로 2인(19134년 헌법개정까지)으로 했다. 그러나 1961년 개정된 헌법 이후부터는 장로총대를 목사회원과 동일하게 각 3인으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90]

시대별로 헌법이 개정될 때에 다른 규정과 연계하여 관련 규정을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살피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개정하므로 관련 다른 조항과 충돌되는 경우들이 존재해왔다.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초기 헌법으로부터 변천 역사와 더불어 관련 규정과의 관계 속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개정할 때에 다른 관련 조항과 연계하여 통일성 있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회 성수(의사정족수)는 이같

89) 노회 조직은 회원 모든 목사와 21당회 이상으로 규정하므로 미조직교회는 노회 조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미조직교회가 수백개처라 할지라도 노회 구성요건과는 무관하다. 오직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만이 노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맹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에 노회 조직으로 “노회는 일정한 구약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개처(조직교회)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정치 제11장 제73조) 여기서 시무목사란 조직교회 위임목사와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의미한다(정치 제5장 제27조).

9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에 노회의 개회성수는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11장 제76조).

은 관련 조항을 살피지 않고 개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재의 헌법에 의하면 노회 구성요건이 초기 헌법과 다르게 변경되었으므로 의사정족수 역시 변경해야 옳았다. 그러나 노회 구성요건은 변경하면서 의사정족수는 초기 헌법 그대로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헌법은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1]

② 의결정족수

노회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 노회의 재산분쟁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단체법에 유추적용하여 판단한다. 이런 경우 노회결의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는 노회의 의사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어도 의결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는 노회규칙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모든 결의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노회 규칙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원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특별히 규칙 개정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 노회는 노회 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노회 재산이다. 노회가 분립되면서 노회 재산의 귀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때에는 노회 규칙에 관련 재산의 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처리 규정이나 관련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 진다. 문제가 복잡해져서 자체 합의로 결정되지 못할 때에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법원의 판단은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판단한다. 노회의 관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회규칙에 각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규정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별히 노회 재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결의할 때에 정족수 문제를 분명히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4) 표결방법

의장은 표결할 때 표결하려는 안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건 상정이 아닌 내용을 결의하면 안된다. 의장은 이를 회중들에게 잘 설명하고 참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 후 결의하려고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면 된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 · 반대 · 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92] 어떠한 의안에

9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Ⅳ.정치 제11장 제76조.

대해서 의장이 회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 만장일치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결방법에 관하여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기권자를 확인하여 나머지는 찬성으로 하여 가결할 수 있다. 또한 투·개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반대표와 찬성표의 비율을 따져 의안을 통과시키는 표결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① 만장일치로 결의할 경우 표결방법

상정된 안건을 토론한 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할 경우, 회장은 "동의에 재청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때 회중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회장은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라고 한다. 회중이 '예'라고 하면 회장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때 회중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리고 '원안 동의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가부를 물은 뒤 표결하여 공포하면 된다.

그러나 회장이 토론 후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다. 이때 회중이 침묵하거나 '없습니다'라고 하면 회장은 곧바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이의가 없으면 모두가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가결을 공포할 수 있다.

② 찬·반의 경우 표결방법

결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노회원 중에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회장은 표결하여 가부를 물어 결의하면 된다. 찬·반 의사로 대립될 경우, 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결하면 된다. 노회는 정회원과 언권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회원을 상대로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의권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결의가 무효될 수 있다.

6. 의사록(회의록)

1) 노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정기노회이든 임시노회든 회의를 마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이다.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회의록 뿐이다.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법리에 맞게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의결권자는 총 몇 명이며, 출석한 회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안건의 결의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한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찬성과 반대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이유는 없다. 인원 숫자만 기록하면 된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2) 회의록에 첨부 내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일부 노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계가 유인물로 재정을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승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아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회

9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계가 다음과 같이 재정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라고 하면서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회계가 유인물로 별첨과 같이 보고하니 승인하다"라고 기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에 유인물을 첨부하여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유인물을 별첨하는 경우, 나중에 별첨이 사라진 경우들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록 서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필로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회는 아예 이를 제도적으로 결의하여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의록 채택과 회의록 효력 여부

간혹 노회 회의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의가 없었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록 서기는 결의된 대로 기록하면 된다. 기록하고 나서 의장과 회록 서기의 날인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결의 내용에 대해 첨예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기록시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의하고 나서 회장은 결의 내용을 정확히 낭독하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회록 서기는 본회에서 낭독한 결의 내용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회의를 마친 다음에 결의 내용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회록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여 회장은 수정 여부를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회의록 채택'이라 하는 데 이는 기록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회의록 채택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회의록 채택을 노회 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이를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추후 노회 임원회가 회의 내용을 잘못 채택하여 회의록이 기록되었을 경우, 차기 노회 개최시 회순에 '전 회의록 낭독' 순서를 두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역시 반드시 정확히 표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회의록, 민법 규정과 판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법령인 상법, 형법, 민법이 있는 데 종교단체인 교회나 노회에 적용된 법령은 민법이다. 노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경우,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판단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사단법인의 총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노회 총회인 정기회와 임시노회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회의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판례법리로 확정하고 있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93]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의 결과에 대한 입증 방법은 회의록뿐이다. 회의록은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회의 결과에 대한 증명력은 회의록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는 1년 뒤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발전된 판례를 내놓았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4]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이때 제출된 자료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다.

5) 회의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과거의 회의록을 잘 보관하는 노회가 있는 반면, 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실된 경우들이 많다. 매 회기마다 회록 서기가 바뀌고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노회 서기가 자주 바뀌다 보니 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노회들이 많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면 관련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보존이 잘 된다. 그렇지 못한 노회들은 노회 회의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록을 분실하다 보니 과거 역사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회의록을 복사 등으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회의록에 기록된 잔무의 의미

잔무(殘務)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안건 중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일을 의미한다. 여기서 잔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안건 중에 특별한 이유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으로 제한된다. 노회 임원회에 잔무를 맡기고 폐회할 경우, 여기서 잔무란 포괄적 위임이 아닌 제한적 위임이다. 회의록 채택을 본회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역시 잔무에 포함된다.

7. 결론

피선교지인 이 땅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1884년부터 최초로 개신교 복음이 전해졌다. 복

9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참조.
9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별교회는 치리회인 당회가 조직되고 지교회의 상급치리회인 노회가 1907년에 최초로 조직되었다. 아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노회 운영을 위해 '장로회 규칙'이 독노회인 190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된 이후 1922년에 최초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출판되었다.

최초의 '장로회 규칙'인 노회 규칙 4조 치리회 규정에 의하면 당회, 노회, 총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노회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인과 조직하지 못한 교인을 총찰하고, 지교회의 조직, 여러 지교회의 통합, 지교회의 이동, 폐지, 징계, 목사와 강도인의 사면과 전임 허락, 강도인의 강도 허락, 목사후보생 시취, 당회록 검사, 당회, 지교회의 지도,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 직원퇴임, 전도, 학교일과 지정 등 모든 사항의 지도, 재판, 청원 사항을 총회에 헌의, 총회총대 결정, 지교회의 재산 관리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지교회 재산의 노회 소유권 규정은 1922년판 최초의 헌법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대법원은 단체의 소유권에 대한 민법의 강행규정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총회는 2018년 개정 헌법에서 지교회 재산에 대한 노회 소유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처럼 노회 규칙과 국가의 각종 법령과 충돌될 경우, 노회 규칙과 교회헌법(교단헌법)의 일부 규정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상실되기도 했다. 현대 복잡한 교회 현장 상황들은 지교회와 노회와 많은 갈등으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지도자들의 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한 정치적인 개입은 지교회와 노회를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제 노회는 달라져야 한다. 몰랐다는 것을 조건으로 핑계할 수 없으며, 노회와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교회와 노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판단의 준거가 되는 각종 법령과 원칙, 종교 내부인 교단헌법, 노회 규칙들을 잘 이해(학습)하여 교회와 노회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런 점을 위해 작성되었다.(*)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회복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중심의 인터넷 언론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총회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2년 동안 각종 자료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와 관련한 교회법 연구를 통해 교회 회복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
- 리폼드뉴스
  기업은행 147-108025-04-016(예금주: 소재열)

노회재판국의 교리재판에 대한 소고

교리에 대한 이단재판과 총회의 이단결정

1. 서론

법령상 교회라고 할 때에는 기독교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종교단체까지 포괄할 때에는 종교단체라는 통칭을 사용하여 기독교는 교단, 불교는 종단이라고 한다. 법문언상 대체로 교회란 개념에는 지교회(개별교회)만을 포함하고, 교단은 교회개념보다는 종교단체(교단)라는 더 넓은 개념에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교회라 함은 야소교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로서…."라고 한다.[95]

교회는 교단헌법을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근거로 운영한다. 법원의 판단은 지교회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교단헌법을 자치법규로 사용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제정할 때 이를 변경으로 해석하고 있다.[96]

지교회는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권징재판은 교단헌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치리회 연합인 3심제의 치리제도를 채택한다. 권징은 '권선징악'의 준말로서 징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교단헌법을 인정하여 교단(노회, 총회)의 권징재판의 판결은 그 교단 산하 모든 직원(목사, 장로, 집사 등) 등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사 어느 정도의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본질적 규정에 대한 위반이나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하며, 그 결정 내용이 실현되도록 협력한다.

장로회는 지교회의 치리회로서 당회를 두며, 일정한 지방(지역) 안에 모든 목사와 지교회 당회가 파송한 총대장로로 치리회인 노회를 구성하여 관할 내 모든 지교회와 당회 및 목사, 소속기관, 단체를 총찰하게 하며, 치리회인 최고회인 총회를 둔다.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회인 노회는 장로와 교인들의 2심 재판의 관할이 되며,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이 된다. 치리회로서 노회는 당회의 상회가 되며, 총회의 하회가 된다. 노회는 원심인 당회의 항소(상소)심이 되며, 목사에 대해 총회의 원심치리회가 된다. 헌법상 대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목사에 대해서는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종교내부의 교리와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는 최대한 관여를 자제하고 종교내부의 결정과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노회재판국에서 교리문제로 이단재판으로 목사직을 면직하는 재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95) 대법원 195712.13.[4290민상182] 판결.
96) 대법원 판례법리로 확충되었다.

2. 법원의 권징재판의 사법심사 여부

대법원이 교회의 재판이 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판국이 목사, 장로 등에 대하여 정직, 면직"에 대한 종교 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해 판단한다. 권징재판은 "종교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97]

이같은 판결 후 1981년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라고 발전된 판결을 내놓았다.[98]

법원은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99] 이같은 판결은 종교 내부의 교리와 그 해석에 미치는 분쟁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고 종교 내부의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경우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100]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경우,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101]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징재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고 있다.

3. 교리·이단재판과 이단결정의 차이점

권징재판이란 치리회에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단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교단총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102]

>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97)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118 판결.
98)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76 판결.
99)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5다1038 판결.
100)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101)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102) 대법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권징재판은 소속 구성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아닌 자에 대한 시벌 효력은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본 교단을 탈퇴한 목사에 대해 소속 노회가 목사직 면직판결를 하였을 때에 그 효력 여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목사가 소속 노회의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면직하지 않고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한다.[103]

여기서 '교단탈퇴 행위'를 '관할 배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교단탈퇴한 자를 노회 회원 명부에서 삭제만 하는 것이지 '목사직 면직 처분'은 위법이라며 간혹 당사자가 법원과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면직처분을 위한 재판이 중대한 절차적 위반일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면직처분일 때에는 인정된다. 단지 교단탈퇴는 본인만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탈퇴한 행위는 '교회 불법 분립' 죄로 면직 사유가 된다.[104]

교단탈퇴로 인해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목사가 총회에 상고할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단탈퇴로 인해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105]

교단총회에 소속된 자에 대한 교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권징재판을 통해서 권징조례 제42조에 의해 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자나 단체에 대해 교리재판, 혹은 이단 재판은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총회의 신학부나 총회 이대위를 통한 총회 본회에서 행정결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노회의 교리·이단재판 절차

노회와 총회재판국의 교리·이단재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 다음과 같이 헌의 되었다. 이 문제는 총회 신학부에 보내어 연구하도록 허락했다.

-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노회, 총회 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키로 하다'로 결의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신학 문제는 반드시 신학부가 먼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결정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총회규칙〉 제9조 제3항에 '신학부'의 직무에 의하면 "신학부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이단적인 신앙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이 교리 위반에 대한 이단을 주장한 자에 대한 재판은 교리재판으로 교단총회의 교리문제로 접근한다. 총회 신학부는 제104회 총회 헌의에 따라 제105회 총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확정됐다.

총회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키로 해달라는 헌의의 건.

---

10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V.권징조례 제54조.

10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V.권징조례 제42조.

105) 교단탈퇴한 자가 다시 복귀할 때에는 "본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재가입에 대한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 허락하는 100회 총회결의대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제104회 총회결의(2019). 그러나 복귀할 때에는 탈퇴시 제명은 재심으로 치유하여 복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면직되었을 경우, 이를 원인무효시키면 복귀가 가능하지만 해벌할 경우에는 목사 임직을 위해 안수를 다시 받아 복귀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교리재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해 달라는 헌의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사건은 사안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자칫 신학부의 해석이 재판에 영향을 주어 신학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어떤 것들은 연구결과에 따른 상반된 시각의 차이에 따라 재판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신학부에 의뢰하여 그 해석에 근거해서 재판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총회재판국 자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를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진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06]

헌의안 원안의 청원 대상은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이었다. 신학부가 총회재판국을 중심으로 답변하였지만 이는 노회재판국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단총회의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문제는 공적인 총회신학부의 판단으로 단일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이 교리재판에서 교리에 대한 문제는 신학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개혁주의 신학자를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진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신학자를 선정할 것인지, 몇 명의 신학자에게 의뢰할 것인지는 재판국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하였다. 재판국은 신학자에게 의뢰 할 경우에는 통합 측 처럼 5명 이상의 교단 직영신학교 신학자에게 의뢰하여 과반수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고 결의하면 좋을 것이다.[107]

노회의 교리재판에서 교리위반에 대한 이단으로 목사직 면직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해석이나 교리 해석에 대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교리재판이 마녀사냥식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은 분쟁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판단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교단의 신학적·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국원들이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단여부를 판단하여 목사직에 대한 면직 판결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재판국원들이 목사의 신학적·교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른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이단에 해당된 교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 신학자나 총회 신학부에 의뢰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이단적인 교리위반이 아니라 신학의 강조점이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인지, 오해로 인한 주장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마녀사냥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회재판국은 어느 한 일방을 위해서,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하면 안된다. 교리적인 재판이 정치적인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단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10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보고서(합동)』 (2020), 468.

10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헌법시행규정', 제63조.,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신약성경과 탈무드

정 규 철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
예수인교회 협동목사

탈무드란 무엇일까?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다. 유대교는 성경이 아니라 토라 해석의 전승이라는 탈무드에서 유래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삶의 환희를 추구한다.[1] 탈무드는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다. 게마라는 미쉬나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이다. 이것을 탈무드라고 불렀으나 중세에 기독교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게마라라고 이름을 바꾸었다.[2] 게마라는 미쉬나를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미쉬나가 없으면 탈무드도 없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미쉬나만 있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미쉬나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다음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가 탈무드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약성경이 언급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마태의 기록

마태는 탈무드의 원조인 미쉬나를 '장로들의 전통'(마 15:2)으로 표기하였다.[3] 미쉬나는 모세의 토라 해석의 전승이라는 구전율법이다. 마태는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명시하였다(마 15:1). 마태는 예수님이 미쉬나(탈무드)를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번 반복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고하셨음을 기록하였다(마 23:13-36).[4]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천국 문을 닫아 들어가려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을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눈먼 인도자이고,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같으며,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증명함이라고 마태가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마태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었고(마 23:15),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었다(마 23:33). 이 같은 마태의 신랄한 공격이 원수 사랑과 모순되지 않은 것은 천국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마태는 악한 농부의 비유(마 21:33-46)와 혼인 잔치의 비유(마 22:1-14)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명시하였다.

2. 마가의 기록

마가도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기록하였다(막 7:1). 마가복음 7:3, 5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미쉬나를 가리킨다.[5]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봉하는 신앙체계는 미쉬나(탈무드)였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막 7:8-13).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전통'에 불과한 미쉬나(탈무드)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3. 누가의 기록

누가는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37-54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화로 책망하시고, 율법 교사들에게도 3가지 화를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미쉬나(탈무드)를 신봉하고 가르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소홀히 여기고,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의 선례를 따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누가는 누가복음 12:1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기록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당시 유대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위선, 사랑 없는 율법주의, 교만, 거짓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 그리고 그릇된 인도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누가가 누가복음 11:39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미쉬나의 「정결법」(테하롯)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6] 또한 누가가 누가복음 11:42에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화를 기록한 것은 유대교의 전승인 미쉬나(탈무드)의 여러 곳에 논의된 십일조에 관한 규정들이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나타낸다.[7]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 6:14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이라는 말로 미쉬나를 표현하였다. 조셉 피츠마이어는 '모세가 전해준 관례들'은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랍비들이 구전으로 물려준 전통으로서 미쉬나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8] 요세푸스는 이러한 구전전통을 '조상이 물려준 규정들'이라 하였고, 이 규정들은 율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9] 미쉬나는 이러한 규정들의 전통을 '조상들의 말씀'이라 하였다.[10] 이처럼 전통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플라톤이 "관습은 글로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라고 한 말 때문일 수 있다.[11] 또 누가는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행 15:1)는 말로 구전율법인 미쉬나를 드러냈다. 누가가 사도행전 23:6-8에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주장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미쉬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2] 또한 '그 관습들'(행 21:21),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행 26:3) '조상들의 관습'(행 28:17)도 누가가 미쉬나(탈무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대로 누가는 미쉬나를 신봉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4. 요한의 기록

사도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밝혔다(요 8:13, 44). 당시 바리새인들은 미쉬나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요 8:13).[13]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요 8:33) 아브라함의 중재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미쉬나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14]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거스르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다(요 8:44).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에 미쉬나(탈무드)를 따르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자칭 유대인'이 '사단의 회'라는 요한의 기록과 일맥상통한다(계 2:9; 3:9).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서머나 지역의 자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양립할 수 없는 우상숭배자들인 지역 당국자들과 세력을 규합했다. 이들은 유대교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15] 그레고리 비일에 따르면, '사탄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16]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이다(계 12:10). 자칭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17]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탈무드(미쉬나)를 신봉하던 자들이었다(마 15:1-3).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고(요 8:44), 하나님의 감람나무에서 꺽이었다(롬 11:17-21).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의 모독을 받지만(계 2:9) 거짓말하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계 3:9). 이것은 회심을 말하기 보다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18] 예수님께서 미쉬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마귀의 자식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

5. 바울의 기록

개종 전 유대교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는(빌 3:5) 유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쉬나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빌 3:7-8).[19]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빌 3:8). 바울은 그의 '조상들의 전통'(갈 1:14)과 '율법의 행위'(갈 2:16; 3:2, 5, 10)란 용어로 미쉬나(탈무드)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20] 바울이 말한 '조상들의 전통'(갈 1:14)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21] 하나님의 계시 행위에 기원을 갖지 않은 미쉬나를 가리킨다.[22]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했을 때(갈 1:12),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미쉬나로부터 복음을 전수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간증이다.[23]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갈 1:11-12).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미쉬나(탈무드)는 아무 관련이 없다.

바울이 갈라디아서(2;16)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미쉬나를 가리킨다면, 로마서(3:20, 28)에 말하는 '율법의 행위'도 미쉬나의 유대교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라 전통적인 율법주의를 말했다고 슈라이너가 샌더스의 주장을 해석했다.[24] 그 전통적인 율법주의는 미쉬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너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샌더스가 말하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미쉬나(탈무드)에 따른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5]

바울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는 조상들의 전통이면서 '다른 복음'이다(갈 1:6-9).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선

언하였다(갈 3:10). 이 저주는 최종적인 멸망과 유죄판결을 가리킬 수 있다. 이 저주의 대상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인 미쉬나(탈무드)로는 칭의를 얻기는커녕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기록이다.

6. 베드로의 기록

베드로가 기록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유대교의 미쉬나(탈무드)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벧전 1:18). 이 '헛된 행실'은 이교도의 헛된 행실의 전통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미쉬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26] 베드로가 말하는 조상들 중에 유대인의 조상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1:16의 "내가 거룩하니 나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레위기의 인용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미쉬나 포함)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베드로가 기록하였다(벧전 1:18-19). 베드로기 기록한 헛된 행실에는 유대교의 미쉬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1) 신약 성경은 미쉬나(탈무드)를 강하게 비판한다. 마태는 예수님이 탈무드(미쉬나)를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번 반복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고하셨음을 기록하였다(마 23:13-36). 마가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막 7:8-13)라는 기록으로 미쉬나를 비판했다. 누가는 누가복음 11:37-54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율법 교사들에게도 3가지 화를 선포하신 것을 기록함으로 미쉬나를 비판하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밝혔다(요 8:13, 44). 또한 요한은 당시에 탈무드(미쉬나)를 따르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자칭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명시했다(계 2:9; 3:9). 바울은 마쉬나를 의미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선언하였다(갈 3:10). 베드로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말로 미쉬나(탈무드)를 비판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미쉬나 비판은 곧 신약 성경의 탈무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2) 구전율법으로서의 미쉬나와 미쉬나의 해석인 게마라(탈무드)는 성경이 아니다. 미쉬나(탈무드)는 모세의 율법해석의 전승이라는 구전율법의 모음집이다. 구전율법은 성문율법을 능가할 수 없다. 구전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성문율법은 성경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구전율법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인정될 수 없다(계 22:18-19).

(3) 유대교의 미쉬나(탈무드)는 반기독교적이다. 왜냐하면 1) 유대인의 미쉬나(탈무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폐하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들'이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 미쉬나(탈무드)를 따르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사도요한의 기록 때문이다. 3) 오늘날

도 탈무드를 따르는 유대교는 변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유대교인'으로 선전하고,[27] 심지어 예수님을 '사악한 사제'로 평가하기 때문이다.[28]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도 유대교를 옹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29]

(4)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탈무드를 배척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원천 봉쇄적 배척의 방법보다는 예수님과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루살렘 성전 뜰과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신약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지혜롭고 선한 싸움의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1) 마빈 토케이어, 「유대인 성경 탈무드」, 이찬일 역(부산: 도서출판 선영사, 2001), 310.
2) 마이클 카츠, 거손 슈워츠 공저 「원전에 가장 가까운 탈무드」, 주원규 역 (서울: 바다출판사, 2019), 55.
3) R. T. 프랜스, 「마태복음」, 권대영, 황의무 공역, NICNT(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680, 685; 도날드 헤그너, 「마태복음 하」, 채천석 역, WBC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0), 704; 신충훈, 「유대인의 세계가 보인다」(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6), 104.
4) R. T. 프랜스, 「마태복음」, 1009.
5) 윌리암 레인, 「마가복음 상」, 이상훈 역, 뉴 인터내셔널 성경주석(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307-13.
6) R. T. 프랜스, 「누가복음」, 이옥용 역, TTC(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288.
7) m. Seb. 9. 1, m. Maas. 4. 5, m. Dem. 2. 1, m. Maaser Seni in 대럴 벅, 「누가복음 2」, 246.
8) 조셉 A. 피츠마이어, 「사도행전 주해」, 박미경 역(칠곡: 분도출판사, 2015), 555.
9) 요세푸스, 「전기」. 38. § 191, 「유다 전쟁사」. 7. 10. 2. § 424 in 조셉 A. 피츠마이어, 「사도행전 주해」, 555.
10) m. Aboth, 1, 1; 조셉 A. 피츠마이어, 「사도행전 주해」, 555.
11) 플라톤, 「법률」 7. 793a; 조셉 A. 피츠마이어, 「사도행전 주해」, 555.
12) F. F. 브루스, 「사도행전」, 김장복 역, NICNT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557.
13) 미쉬나 Ket. 2:9 in 레온 모리스, 「요한복음 하」, 이상훈 역, 뉴 인터내셔널 성경주석(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2.
14) 크레이그 S. 키너, 「요한복음 II」, 이옥용 역(서울: CLC, 2018), 2033.
15) 크레이크 R. 쾨스터, 「요한계시록 I」, 최흥진 역, 앵커바이블(서울: CLC, 2019), 437-39.
16) 그레고리 K. 비일, 「요한계시록 상권」, 오광만 역, NIGTC(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84.
17) 그랜트 오즈번, 「요한계시록」, 김귀탁 역, BECNT(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176.
18) 이한수, 「요한계시록」(도서출판, 솔로몬, 2018), 91.
19) 프랭크 틸만, 「빌립보서」, 채천석 역, NIV 적용주석(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207;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채천석 역, WBC(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9), 270.
20) 리처드 N. 롱에네커, 「갈라디아서」, 이덕신 역, WBC(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3), 218-19; 이상근, 「갈·히브리」(대구: 성등사, 1990), 37.
21) Ernest De Witt Burt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ICC(Edinburgh: T. & T. Clark, 1948), 48.
22) J. 루이스 마틴, 「갈라디아서」, 김병모 역, 앵커바이블(서울: CLC, 2018), 234, 256;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김석근 역, 존더반 신약주석(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7), 104.
23) J. 루이스 마틴, 「갈라디아서」, 234.
24)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166.
25)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Philadelphia: Fortress, 1977). 최첨단 현대 유대교적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샌더스의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탈무드에 의한 관점으로 보는 평가는 아직 없는 것 같다.
26) Edward Gordon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7), 145.
27) E. P. 샌더스, 「예수와 유대교」, 황종구 역(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8), 454-59.
28) 조철수, 「예수 평전」(서울: 김영사, 2010), 123-47.
29) James D. G. Dunn, *The Partings of the Ways: Between Christianity and Judaism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Character of Christianity*(London: SCM pres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1), 247; 톰 라이트,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비전」, 최현만 역(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6), 106.